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51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윤종오  
용혜인 · 손 술 · 최혁진  
이용우 · 한창민 · 허성무  
김준형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에 포괄되지 않는 노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를 원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정의 조항이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노무제공자 및 실질적 노동수령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최저임금법의 취지 역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재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

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함(안 제6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로 본다.

제6조제1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는”을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도급인이”를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도급인은”을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도급인이”를 각각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  
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  
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략)

⑦ 도급인이 사업을 행하는 경  
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  
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  
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  
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생략)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  
령자가-----  
-----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는-----  
--.

⑧ -----도급인 또  
는 실질적 노무수령자가 ----  
-----.

1.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  
령자가-----  
-----  
-----

2.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  
령자가 -----  
-----  
-----

⑨ (현행과 같음)